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업지시서**

2022. 8

**국 토 교 통 부
교통정책총괄과**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
II. 과업의 내용	2
III. 과업수행지침	4
IV. 보안대책	7
V. 보고서 제출	15
VI. 예정공정표	16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2. 소요예산

- 일금 팔천만 원(₩80,000,000)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36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교통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정립, 법정계획·제도 재편 등 추진 필요성 증대
 - 그간 법안들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 교통권 보장,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수립, 교통서비스 개선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정
 - * 법안별로 대중교통법의 흡수폐지 여부,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 타 분야에 비해 교통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법정계획·행정조사 등으로 행정소요 발생, 내용중복을 감안하여 역할 정비 필요
 - * 정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수: (교통) 22개 (항공) 6개 (도로) 5개 (철도) 9개
 - 일본, 프랑스 등 해외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명문화할 필요성과 방안 검토 필요
- 관련 입법례 조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입법 방향을 검토하고 제정 조문안 마련

II.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 교통정책기본법 제정필요성 및 타 법령과의 위계 검토

- 他 분야 기본법 사례*, 해외 입법례(프랑스·일본)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기본법 수립 필요성 검토
 - * (주요 기본법 제정사례) 물류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주거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 교통정책기본법과 통합교통체계법, 대중교통법 등 교통관련 기존 법령들 간의 위계, 역할 등 법체계 검토
 - 특히, 과거 제정안 별로 대중교통법 흡수·폐지여부가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법률별 기능, 행정효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법체계 도출

2. 교통정책기본법 주요내용

- 他 기본권 사례(주거권 등), 해외사례(프랑스·일본), 개별법 상 명문화된 교통 관련 권리*를 참고하여 교통권 명문화 방안 검토
 - * (예) (대중교통법)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법)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정책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교통 기본계획을 신설, 교통분야 기존 계획과 역할조정 추진
 - 계획기간·내용이 유사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흡수 필요성 등을 검토

계획명	계획기간	근거법	주요내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	통합교통체계법	· 교통분야 수요예측, 정책방향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	20년	광역교통법	· 광역교통분야 수요예측, 정책방향

계획명	계획기간	근거법	주요내용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0년	지속가능교통법	·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10년	간선급행버스법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년	통합교통체계법	· 국가망계획의 이행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5년	대중교통법	· 대중교통 수요전망, 정책방향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	5년	택시발전법	· 택시 수요전망, 정책방향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5년	통합교통체계법	· 연계교통체계 구축현황, 구축방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현황, 확충방향

- 기본법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사 신설 시(예: 최저교통서비스기준 미달 지역 조사), 기존 교통관련 조사와의 역할 분담 검토필요

계획명	조사주기	근거법	주요내용
국가교통조사	5년	통합교통체계법	· 교통수단별 통행량, 수송분담률,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조사	매년	지속가능교통법	·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표 산출
교통약자 실태조사	5년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수, 이동편의시설 현황, 만족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5년	대중교통법	· 대중교통 이용실태, 시설현황, 교통량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22.12 신설)	검토 중	광역교통법	· 광역교통 이용실태, 시설현황, 교통량

- 평가·조사 용이성,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현황 조사와 기준수립 방안 등을 검토

3. 타법 개정 필요사항 도출

- 교통관련 법체계, 제정안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시 병행하여 개정 필요한 법령들의 개정내용 도출
 -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을 통합교통체계법, 대중교통법 등 관계법령과 비교하여, 관계법령 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 도출

I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0일(12개월)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따라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수행상의 인건비 및 경비는 계약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 여부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 등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사항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10일전까지는 집행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IV.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 공개 및 이용이 가능하다.
6.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7.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에 대하여는 “대외주의” 대신 “대외비”로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9.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보안책임자 관리 하에 철저히 파기하여야 한다.
10.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1.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4. 과업 수행 중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V. 보고서 제출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및 방법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 기간 1/2 경과시 그간 추진 성과, 예정공정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 연구 현안 발생 등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종료 2주일 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보고서 제출부수

구 분	시 기	내 용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구상안	10부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간공정보고	10부	
최종보고서(안)	준공일 14일 전	전 과업내용	10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전 과업내용	30부	

VI.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 전문가 구성												
○ 자료조사 및 문헌조사												
○ 착수보고												
○ 전문가 회의												
○ 공청회·토론회(2회)												
○ 간담회(3회)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보고서 수정 및 발간												

※ 연구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